

41. 대구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5231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18. 10. .
 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
 운 영 위 원 장

1. 개정이유

- 대구광역시 조직개편(안)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대구광역시 조직개편(안)에 따라 행정기구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직무 및 소관사항을 조정함 (안 제3조의2,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2제2항제2호가목, 제3호가목, 제4호가목, 제5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획행정위원회

- 가. 감사관, 기획조정실, 시민안전실, 시민행복교육국, 자치행정국, 소방안전
 본부,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문화복지위원회

- 가. 대변인, 홍보브랜드담당관, 보건복지국, 여성가족청소년국, 문화체육관광국, 보건환경연구원 소관
 에 속하는 사항

4. 경제환경위원회

- 가. 경제국, 일자리투자국, 혁신성장국, 녹색환경국,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

5. 건설교통위원회

- 가. 교통국, 통합신공항추진본부, 도시재창조국, 상수도사업본부, 건설본부,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
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3조의2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획행정위원회</p> <p>가. <u>감사관, 기획조정실, 재난안전실</u> <u>시민행복교육국, 자치행정국,</u> <u>소방안전본부, 공무원교육원</u> <u>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나. 대구시설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</p> <p>3. 문화복지위원회</p> <p>가. <u>대변인, 홍보담당관,</u> <u>보건복지국, 문화체육관광국,</u> <u>여성가족정책관, 보건환경연구원</u> <u>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나. 대구의료원 사무에 관한 사항</p> | <p>제3조의2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가. <u>감사관, 기획조정실, 시민안전실,</u> <u>시민행복교육국, 자치행정국,</u> <u>소방안전본부, 공무원교육원</u> <u>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<u>대변인, 홍보브랜드담당관,</u> <u>보건복지국, 여성가족청소년국</u> <u>문화체육관광국, 보건환경연구원</u> <u>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4. 경제환경위원회</p> <p>가. <u>국제협력관, 도시브랜드담당관, 일자리경제본부, 미래산업추진본부</u> <u>녹색환경국, 농업기술센터</u> <u>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나. 대구환경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</p> | <p>4. -----</p> <p>가. <u>경제국, 일자리투자국, 혁신성장국, 녹색환경국,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5. 건설교통위원회</p> <p>가. <u>도시재창조국, 건설교통국, 공항추진본부, 도시기반혁신본부, 상수도사업본부, 건설본부,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나. 대구도시철도공사, 대구도시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</p> |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<u>교통국, 통합신공항추진본부, 도시재창조국, 상수도사업본부, 건설본부,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6. (생략)</p> |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|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62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